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 심의 회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4-003-037호

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4. 2. 14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: 4,5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조사( 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2. 행위 사실

### 가. 개인정보 수집.이용 현황

피심인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관하고 있다.

개인정보파일	수집ㆍ이용 항목	수집일	보유건수(명)

### 나. 개인정보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 1)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기 관리자페이지(http://index.htm) 내에 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으며, 외부에서 ' '관리자페이지 및 ' '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려는 경우 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 1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."라고 규정하면서 "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(제2호)", "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위한 조치(제3호)"를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-6호, 이하 '고시') 제5조제3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고시 제6조제2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인증서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한다."라고규정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##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## 1) 접근 권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'

' 관리자페이지 내에 접근 권한 부여·변경·말소 내역을 기록·보관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, 고시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2)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

'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, 고시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세부내용
안전조치의무 위반	보호법 §29	•시스템 접근 권한의 부여 • 변경 •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행위 •외부에서 시스템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 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.9.15.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:			
ਜਦਲਜ	근기 답으는	1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		
아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5호	600	1,200	2,400		

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대료 부과지침 제7조는 "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3]의 가중기준(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조사방해, ▲위반 주도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[별표3]의 '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'로서 기준 금액의 15%인 90만 원을 가중한다.

#### < 과태료 가중기준 >

기준	가중사유	가중비율
위반 정도	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 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	기준금액 15% 이내

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"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, ▲개인정보보호 인증, ▲자율규제 규약 등, ▲개인정보보호 활동, ▲조사 협조, ▲자진 시정 등, ▲피해 회복·피해 확산 방지, ▲자진 신고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"감경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,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이 조사 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,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[별표2]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40%인 240만 원을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 감경기준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조사 협조	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기준금액 20% 이내
자진 시정	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기준금액 20% 이내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		과태료 금액 (단위 : 만원)			
위반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-C)
제29조 (안전조치의무 위반)	법 제75조 제2항제5호	600	90	240	450

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